

선정 훈련과정 운영 안내

1. 업무 개요

- (근거규정) 「국민 평생 직업능력개발법」(’22. 1. 11. 일부 개정, ’23. 1. 12 시행) 제12조, 제16조, 제18조, 제22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의2 등
- (대상) 2023년 제1차 산업구조변화대응 등 특화훈련에 선정된 12개 훈련기관 및 19개 훈련과정
- (주요내용) 심사 결과에 따라 선정된 훈련과정에 한하여 인정 절차를 거쳐 훈련생 모집 및 훈련 운영

2. 선정 훈련과정 운영 행정처리

□ 훈련과정 인정 및 훈련생 모집

훈련과정 인정 신청서 등 제출	→	훈련과정 HRD 등록	→	훈련과정 인정 처리	→	훈련과정 인정 통보 및 훈련생 모집
부산인자위 (협조: 훈련기관)		훈련기관		고용센터 (훈련기관 소재)		고용센터(통보) / 훈련기관 (훈련생 모집)
5. 23.(화)~30.(화)		5. 23.(화)~30.(화)		6. 7.(수)~		6월 2주~

- ① (훈련기관) 확정된 훈련과정에 대한 ‘훈련과정 인정신청서(붙임 1)’ 및 ‘훈련과정 실시계획서(붙임 2)’, 시간표, 승인받은 훈련과정 신청서(심사 시 제출한 훈련과정 신청서 중 승인받은 훈련과정 신청서만 발취)를 부산인자위에 제출
 → (부산인자위) 훈련기관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
 - 승인된 훈련과정의 내용과 ‘인정신청서’ 및 ‘실시계획서’는 동일하게 작성
- ② (훈련기관) HRD행정지원시스템에 해당 과정을 등록 처리 및 신청
 - HRD행정지원시스템 공지 사항의 “산업구조변화대응 등 특화훈련 사용자 매뉴얼”을 참조하여 등록

- '인정신청서' 및 '실시계획서'와 동일하게 입력

< 훈련과정 입력사항 >

구분	내용
기본정보	훈련기관정보(기관명, 훈련기관번호, 대표자, 전화번호, 기관유형, 소재지) 훈련과정명(담당자 연락처 등), 주야 구분, 정원, 훈련일수(시간) 등
훈련과정 내용	훈련목표, 훈련가능인원, 훈련내용, 훈련시간표, 훈련대상자, 훈련수준 등
훈련과정 상세	훈련실시장소, 훈련시설, 훈련장비, 훈련교·강사, 훈련교재 등
훈련비 산출	훈련비 등

- ③ (고용센터) 제출된 신청서 및 실시계획서의 내용이 부산인자위에서 의결된 내용과 일치하는지를 최종 확인 후 인정 처리
- ④ (고용센터) 부산인자위의 '훈련과정 인정신청서 및 실시계획서' 등을 제출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 훈련과정 인정 통지서를 발급하여 부산인자위 및 훈련기관에 통지
- ⑤ (훈련기관) 훈련생 모집 및 운영

□ 훈련 개설 및 운영

- 승인받은 훈련과정은 고용노동부의 훈련성과 활용과 관련하여 **2023년 내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해당 실적은 '23년 이후 훈련과정 심사 시 근거로 활용 예정
- * 안내자료 p.5 훈련과정 성과 활용 부문 참조

3. 세부 운영계획

□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동 사업 훈련과정 참여 대상자에 대해서 진단·상담 생략 및 즉시 카드 발급 가능

□ 훈련과정의 변경

- 인정받은 훈련과정의 기존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28조, 제29조를 준용하여 변경인정·신고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함
- * 다만,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28조제3항 및 제4항 등 심사평가기관(직업능력심사평가원)의 의견을 참고하도록 하는 규정은 미적용

- 훈련교·강사, 강의·실습실, 훈련장비·교재 등의 변경이 해당하며, 정원, 훈련비, 소정훈련시간 등 훈련의 중요사항은 변경 불가

< 훈련과정의 내용 변경 >

※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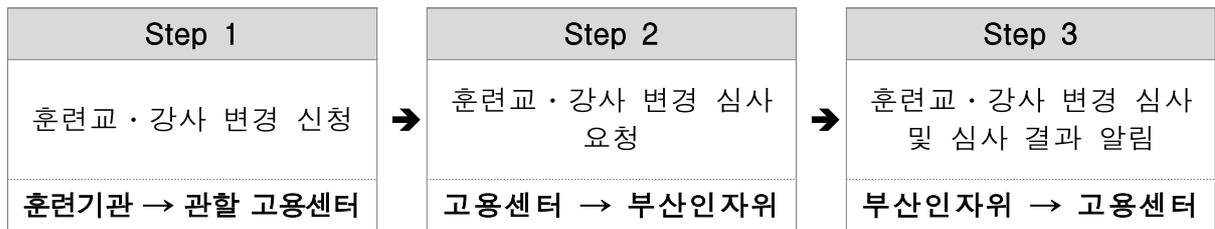
- 제28조(일반계좌제 훈련과정의 변경인정) ① 일반계좌제 훈련과정을 인정받은 훈련기관이 인정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예정일의 10일 전까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인정내용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원, 훈련비, 소정 훈련시간, 교과목별 시간수 등 훈련의 중요사항은 변경할 수 없다.
 - ②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면 변경예정일 3일 전까지 적정성 여부를 결정하여 해당 훈련기관에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 제29조(일반계좌제 훈련과정의 변경신고) 제28조에도 불구하고 훈련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변경사항을 변경예정일의 전일까지 HFD-Net을 통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신고하면 인정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1. 해당 훈련과정의 훈련 교·강사를 교과목별로 인정을 받은 훈련 교·강사 내에서 변경하려는 경우 또는 훈련 교·강사가 예비군 훈련, 본인의 결혼 등 불가피한 사유로 강의를 할 수 없게 되어 임시 훈련 교·강사를 15일 이내에서 대체 사용하는 경우
 2. 해당 훈련기관의 시설인 인접한 건물 내에서 최초 인정받은 시설면적 이상인 강의실·실습실로 변경
 3. 노후, 불량 등으로 최초 인정받은 장비사양 이상의 것으로 장비 교체
 4. 최초 인정받은 훈련교재와 동일·유사한 훈련교재로 변경
 5. 최초 인정받은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의 버전 이상의 것으로 변경
 6. 최초 인정받은 소정훈련시간 및 교과목별 시간수에 변동 없이 1일 8시간의 범위에서 훈련시간표를 변경하는 경우

○ 훈련가능인원의 규모 변경

- 훈련가능인원의 규모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의 절차 준용
 - ① 훈련기관은 지역인자위에 인정받은 훈련과정의 훈련가능인원에 대한 변경(확대, 축소)에 대하여 신청(▲변경신청 전까지의 당해 훈련과정 운영실적(이하 훈련과정 운영 실적), ▲수요조사서 등 변경이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이하 수요조사서 등)를 첨부) → ② 지역인자위 내 산업구조변화대응 등 특화훈련 담당 부서는 신청내용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적정한 경우에는 관할 고용센터에 변경을 요청하는 공문 발송(▲지역인자위의 적정성 검토의견서, ▲훈련기관이 제출한 훈련과정 운영실적, 수요조사 등을 첨부) → ③ 고용센터는 공문 등을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훈련가능인원 변경
- 다만, 훈련기관이 훈련생 모집률이 높아 훈련가능인원을 초과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속한 훈련 운영을 위해 인정된 훈련과정별 훈련가능인원의 150% 내에서는 훈련가능인원의 규모 변경 없이 운영 가능(22. 10월~)

○ 훈련과정의 내용 변경 시 유의사항

- 훈련 실시 전 훈련과정 내용 변경 시 부산인자위와 사전 협의
- 훈련교·강사 변경 시 변경 전 강사와 동일한 수준 또는 그 이상의 강사로 변경 가능
 - 변경 예정 교·강사 점수가 기존 교·강사 점수와 동점이거나 그 이상일 경우 변경 가능
 - ※ 교·강사 점수 증빙 자료 첨부(ex. HRD-Net 행정지원시스템의 교·강사 점수 캡처 등)
 - ※ 단, 관할 고용센터의 요청 시 별도의 심사(부산인자위)를 통해 변경 인정 여부 판단
 - 변경 예정 교·강사 점수가 기존 교·강사 점수보다 낮을 경우 별도의 심사(부산인자위)를 통해 변경 인정 여부 판단
- 훈련교·강사 변경 절차



- 훈련교·강사 변경 심사 일정 및 제출 서류

신청기간*	심사기간	제출 서류
매월 1일 ~ 10일	당월 16일 ~ 20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훈련교·강사 변경 신청 공문 ○ 변경 전·후 교·강사 점수(해당 NCS 직종 점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RD-Net 행정지원시스템의 교·강사 점수 캡처본 제출 ○ 변경 예정 교·강사의 이력(학력 및 경력 등) 증빙 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출 유의사항) 경력 증명서의 경우 관련 경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세부 내용을 기재하여 제출 ex) 세부 수행 직무, 유사 강의 경력(교과목명 등) 등 ○ 훈련교·강사 변경 전·후 시간표
매월 16일 ~ 25일	익월 1일 ~ 5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훈련교·강사 변경 전·후 시간표

* (신청기간) 훈련교·강사 변경 신청 공문 접수일(훈련기관 → 관할 고용센터) 기준

□ 훈련기관 및 과정 지도·감독 운영계획

- 훈련과정 운영의 자율성 보장 등을 위해 지도·감독을 최소화하나, 정기적인 모니터링 실시 예정
- 민원 등(신문고, 전화제보 등) 발생하는 경우 현장 방문 등을 통해 확인하고, 필요 시 수시·특별 감독 실시
 - * 훈련목적에 위배될 정도로 위탁계약을 위반하여 훈련과정을 운영한 사항 등이 적발되는 경우에는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 제16조 및 시행규칙 별표1에 따라 조치

- 실적 점검 시, 개설 지연 및 목표 달성이 우려되는 경우, 훈련기관 대상 별도 컨설팅 실시

□ 훈련 성과 관리

- **(운영현황)** 인정된 훈련과정의 개설 및 운영실적(훈련과정 개설 여부, 훈련참여 인원, 수료인원, 취업인원 등) 보고
 - 정기 훈련 계획 및 실적 제출

구분	산정기간	제출기한	비고
훈련실시계획	익월 1일~익월 말일	당월 20일, 12:00까지	양식 별도 안내
훈련실적	당월 1일~당월 말일	당월 말일, 12:00까지	

※ 제출기한 마지막 날이 휴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전일까지 제출(busanhrd@korcham.net)

※ 부산인자위의 월간 뉴스레터 및 홈페이지에 월별 훈련실시 계획 안내

- 훈련계획서 상 연간훈련가능인원의 수만큼 훈련과정 참여자가 실제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 **(훈련기관 간담회)** 향후 훈련과정 운영방안 및 실적 제출 등 추가 안내 및 애로사항 청취를 위한 별도의 간담회 운영 예정
- 훈련성과
 - 훈련과정별 성과(모집률, 수료율, 취업률, 고용유지율, 훈련생 만족도 점수 등) 제출 (세부 일정 등 추후 재안내)
 - 2023년 훈련과정 성과 활용 부문
 - '23년 이후 「산업구조변화대응 등 특화훈련」에 따라 훈련과정 심사에 있어 기존에 운영 이력이 있는 훈련과정에 대한 적정(승인) 여부 판단 근거 활용
 - 훈련기관이 「산업구조변화대응 등 특화훈련」과 별도로 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이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심사평가('23년 이후)에 참여하는 경우, '훈련기관 역량평가' 점수 산출 근거 활용
 - * 훈련기관별 취업률, 수요자 만족도 등을 산출 및 평가하여, 저평가 기관은 참여 배제

※ **훈련과정 성과지표의 개념 및 산출방식**

① 모집률: $\frac{\text{훈련참여인원수}}{\text{연간훈련가능인원}}$

② 수료율: $\frac{\text{수료인원수}}{\text{훈련참여인원수}}$

③ 취업률: $\frac{\text{취업인원}}{\text{훈련수료인원(실업자)}} \times 100$

* 취업 여부·취업률 산정방식: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에 따름

④ 전직취업률: $\frac{\text{고용보험상실일 이후 180일 이내 고용보험을 재취득한 인원}}{\text{훈련수료인원(재직자) 중 훈련종료 이후 고용보험을 180일 이상 유지 못한 인원}} \times 100$

⑤ 고용유지율: $\frac{\text{180일 이상 고용보험을 유지한 인원수}}{\text{훈련종료일 이후 180일 이내에 고용보험을 취득한 인원수}} \times 100$

* 훈련과정 참여 시점 실업자 훈련생에 한하여 산정

⑥ 훈련생 만족도 점수: HRD-Net 수강평 만족도로 산정

※ **훈련과정 유형별 적용 성과지표 구분**

○ **고용유지훈련**(재직자의 고용유지가 주요 목적): 모집률, 수료율, 훈련생 만족도 점수

○ **전직 및 취·창업훈련**(재직자의 전직 및 실업자의 취·창업이 주요 목적): 모집률, 수료율, 취업률, 전직취업률, 고용유지율, 훈련생 만족도 점수

□ **훈련과정 재인정 특례**

- 2023년 산업구조변화대응 등 특화훈련에 따라 훈련과정 운영을 승인받은 훈련기관이 승인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해당 훈련과정 훈련가능인원의 60% 이상에 대하여 훈련을 실시한 경우*에는 훈련과정의 유효기간(1년) 및 훈련가능인원(기존 한도 내에서)을 재부여하는 재인정 특례 요청 가능**

- 지역인자위는 재인정 특례 요건을 충족한 훈련과정이라도 특별분과위원회 의결 등을 통해 해당 과정의 특례 적용 여부를 심사할 수 있음('23. 5월~)

*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32조제1항에 따라 훈련생 명단이 확정된 것을 의미

** ① (**훈련기관**) 훈련과정의 유효기간이 종료되기 30일 이전에 부산인자위에 유효기간 연장 및 훈련가능인원의 재부여에 대하여 신청 → ② (**부산인자위**) 특례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확인, (필요 시) 특례 적용이 적정한지를 심사한 후 적정한 경우에는 훈련기관에 HRD-Net상으로 훈련과정 등록 처리 및 인정 신청할 것을 안내하고, 관할고용센터에 특례에 따른 훈련과정 인정 요청 공문 발송 → ③ (**고용센터**) 부산인자위로부터 공문을 제출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훈련과정 인정 통지서를 발급하여 훈련기관 등에 통지

□ **기타 사항**

- 훈련과정 승인, 카드 발급, 훈련생 등록 등에 대하여 산업구조변화대응 등 특화훈련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에 따름